

##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2. 4. 1-----사하구청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02. 4. 1
- 다. 상 정 일 자 : 제100회 사하구의회(임사회)  
제1차 총무위원회(2002. 4. 4)원안의결

### 2. 제난설명의 요지(장일룡 재무과장)

#### 가. 제안이유

지방재정법제77조, 동법시행령제84조 및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 국유재산의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매각하여 구세입 증대에 기여코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동 별	과 정 2 동	장 립 1 동
위 치	과정동 203-31번지	장림동 325-29번지
부지면적	265㎡(80평) - 사하구	264㎡(80평) - 사하구
용도지역	일반주거	일반주거
건물구조	RC스라브, 철근블록	RC스라브, 블록
연 면 적	310.32㎡ (지상2층 93.9평) - 1층(181.49㎡) 민원실 및 사무실 - 2층(28.83㎡) 동장실, 회의실 및 중대본부	347.84㎡ (지상2층 105.2평) - 1층(166.12㎡) 민원실 및 사무실 - 2층(181.72㎡) 동장실, 회의실 및 중대본부
예정가격	합 계 : 260,601천원 - 토 지 : 219,950천원 (공시지가) - 건 물 : 40,651천원 (과세시가)	합 계 : 257,605천원 - 토 지 : 208,560천원 (공시지가) - 건 물 : 49,045천원 (과세시가)

### 3. 관련법령 및 조례

- 지방재정법제7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및 같은법시행령제84조  
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
-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(공유재산관리계획)

### 4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- 현 괴정2동사 및 장림1동사는 70년도와 76년도에 건립된 노후건물로서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여 대체부지를 확보 2001. 10월과 같은 해 5월에 동사 신축공사와 관련 각각 구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
  - ▷ 현공정 : 괴정2동 55%, 장림1동 60%
- 신축동사 준공이전후 능률적인 재산관리와 우리구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현 동사를 용도변경하여 매각함이 옳을 것으로 보이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같이 통과시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
### 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### 6. 토론요지 : 생략

### 7. 심사결과 : 원안의결